

제1절 과세표준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의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가액을 말한다. 즉,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금전적 가치를 말함.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를 공급가액이라 한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과세표준

구분	과세표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받은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대가를 외화로 받아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
대가를 외화로 받아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환가하는 경우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1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 함은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말한다.

3) 거래형태별 과세표준

구분	과세표준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장기할부판매 . 중간지급조건부공급 . 완성도기준지급공급 .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공급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4)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

내 용

- ① 장기할부판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 ②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등
- ③ 당해 재화. 용역에 과세된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④ 종업원의 봉사료(다만,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기재**하고 사업자의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5) 관세표준에 제입되는 항목

내 용

- ① 부가가치세
- ② 매출에누리액 및 환입된 재환가액
- ③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멸실된 재환가액
- ④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재환·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
- ⑤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 ⑥ 공급 후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수정세금계산서 교부)
- ⑦ 반환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공제한 용기대금·포장비용

6) 관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항목

내 용
① 공급 후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액
② 판매장려금(단,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세액계산시 차감)
③ 하자보증금(대가의 일부 보관분)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표준

= 관세의 관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4.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관세표준

간주공급의 유형		관세표준
자 가 공 급	면세전용, 영업용승용차의 비영업용 전용	시가(감가상각자산은 인제시가)
	판매목적 원칙	취득가액
	타사업장 반출 내부이익 가산하여 공급시	내부대체가격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시가(감가상각자산은 인제시가)

제2절 관세표준 계산 특례

1. 관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의 공급

안분계산의 취지: 관세사업용 자산의 매각은 관세, 면세사업용 자산의 매각은 면세

(1) 직전관세기간 공급가액으로 안분(일반적인 경우)

관세표준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직전관세기간의 관세공급비율*1 *2

$$*1 \text{ 관세공급비율} = \frac{\text{직전 관세기간의 관세공급가액}}{\text{직전 관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직전 관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휴업 등) :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관세기간의 공급가액

(2) 직전 과세기간 사용면적으로 안분

- 매각대상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당시에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한 경우의 과세표준의 안분기준 : 공급가액비율이 아닌 사용면적비율 적용

과세표준

$$= \text{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times \text{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비율}^{*1}$$

$$*1 \text{ 과세사용면적비율} = \frac{\text{당해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text{당해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3) 안분계산 배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분계산 배제
-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함

- ①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비율 < 5%
(단,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②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 50만원
- ③ 신규사업개시로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2.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

(1) 안분계산의 취지 및 원칙

-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여부
 - 토지 부분은 면세대상
 - 건물 부분은 과세대상 : 과세표준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구분		안분기준
①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
②	감정 모두 기준시가 있음	기준시가
평가액 이 없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기 준시가 없음	1단계: 장부금액으로 안분(장부금액이 없으면 취득금액)
		2단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3.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1)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임대료, 관리비수입 등의 대가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하여 계산한다.

(2)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임대료

2개의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text{과세표준} = \text{선불} \cdot \text{후불임대료} \times \frac{\text{각 과세대상기간의 월수}}{\text{계약기간의 월수}}$$

♠ 월수계산 :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 개시월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보고, 종료월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보지 아니한다(초월산입, 말월불산입)

(3)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을 운영하여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text{과세표준} = \text{임대보증금 등 적수}^{*1} \times \text{정기예금이자율}^{*2} \times \frac{1}{365(\text{윤년은 } 366)}$$

*1 보증금 등 적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과세대상기간의 임대일수를 곱하여 계산

*2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현재 4.3%)